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가단2773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이해진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변론 종결2024. 10. 25.

판결 선고2024. 11. 2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690,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양수금(계약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20. 5. 12.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6416호),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21. 8. 26.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15780호, 대법원 2021다239387호). 위 판결에 따라 C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21. 6. 15. 이 사건 채권 278,690,410원(=원금 200,000,000원+ 2015. 12. 21.부터 2021. 6. 13.까지의 이자 78,690,410원)을 집행채권(이하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으로 하여 C의 D에 대한 판결원리금 채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100006호)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타채2262호). 위 결정은 2021. 6. 24.

제3채무자인 D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21. 12. 24.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집행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78704)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4. 5. 24.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D 측에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D의 피고 예금계좌로 송금

D은 자신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유한 예금 중 2022. 2. 7. 160,000,000원을, 같은 해 4. 7. 290,000,000원을, 같은 해 6. 14. 40,000,000원을 피고의 F조합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좌는 D의 차명계좌로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계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D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집행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친동생인 D의 부탁으로 2021. 12. 28.경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D에게 이를 제공하였고, D이 이 사건 계좌를 전적으로 이용하며 입출금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 2) 그런데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24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집행채권에 대한 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김유성